

2024 아트코리아랩 멤버십 기업·단체 모집 공모요강

예술의 산업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종합지원 플랫폼 <아트코리아랩 (Arts Korea Lab)>에서 입주기업 외 외부 우수 기업·단체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합니다. 사업의 성장과 네트워크 확장을 도모하는 예술기업·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□ 공모개요

- (공모명) 2024 아트코리아랩 멤버십 기업·단체 모집
- (공모목적) 아트코리아랩 입주기업 외 비입주 우수 기업 또는 예술단체를 위한 멤버십 제도 운영으로 해당 기업·단체의 성장과 네트워킹 확장 지원
- (공모기간) 공고일 ~ 2024. 3. 20.(수) 17:00
- (모집대상) 예술×기술 융합 분야 아트코리아랩 비입주 예술기업 혹은 단체
 - ※ 예술기업은 사업자등록증(개인/법인) 소지, 예술단체는 고유번호증 소지 필수
 - ※ 기술분야 예시 : AI, 메타버스, 프로젝트션 맵핑 등의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, 이머시브 사운드, VR(가상현실)·AR(증강현실)·MR(혼합현실)·XR(확장현실) 등
- (모집규모) 예술기업 혹은 단체 30개사 내외
- (지원기간) 멤버십 가입 후 1년 (2024.5~2025.4. 예정)
- (지원내용)
 - (인프라 지원) 아트코리아랩 제작장비 및 시설, 시연공간, 회의실 등 제공

분류	혜택
회의실	멤버십 전용 회의실 제공
창·제작 스튜디오	멤버십 대상 우선 예약 제공
쇼룸	멤버십·입주기업 전용 시연공간 제공

※ 인프라 상세내역은 [별첨] 아트코리아랩 공간이용 가이드 참고

※ 우선 예약은 창·제작 시설 중 다목적 스튜디오, 이머시브 사운드 스튜디오, 키네틱 스튜디오에 한함. 시연공간은 우선 예약 적용 없음.

- (프로그램) 비즈교육, 데모데이, 비즈매칭, 네트워킹 등 역량 강화 지원

구분	상세내용	비고
성장지원	기업진단 및 1:1 맞춤형 멘토링 (월 3회) - 기업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 제공 (BM 고도화·사업모델링, 경영지원 (인사·세무·회계·법률), 기술개발, 투자유치, 홍보·마케팅·브랜딩, 해외진출 등)	개별 멘토링 제공
	사업 역량강화 교육지원 (연 4회) -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, 투자유치 특강, 예술 인사이트 프로그램 등 교육 참여기회	예술기업 특화 입주기업 성장프로그램 동일 제공
	비즈매칭/데모데이 참가지원 - 아트코리아랩 비즈매칭(투자상담회(Closed IR)) 지원 - 피칭 컨설팅 및 아트코리아랩 데모데이 피칭 기회 제공	
커뮤니티	네트워킹 (월 1회) - 아트코리아랩 입주기업과의 네트워킹 지원 - 글로벌 예술기업, 예술가, 기술기반 전문가 등과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참여기회	
기타지원	온라인 홍보 지원 (월 1회) - 보도자료 배포, SNS 홍보 지원 등	-

※ 멤버십 기업(단체)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아트코리아랩 방문 시, 2시간 무료주차 지원

- (의무사항) 성장지원 프로그램 중 1개 이상 월 1회 참여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총 4회 이상 참여 必

□ 신청 및 접수

- (접수기간) 공고일 ~ 2024. 3. 20.(수) 17:00
- (접수방법) 담당자 이메일(akl@gokams.or.kr)을 통한 신청 접수
 - ※ 담당자로부터 접수 확인 메일 수신 시에만 접수 완료
 - ※ 우편, 방문 접수 불가, 제출서류 반환 불가 /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
 - ※ 파일명을 “멤버십신청_기업명or단체명”으로 압축(.zip)하여 1개의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
- (제출서류)

구분	목록	제출방법
필수제출	1. 지원신청서(한글파일 지정양식, 날인 필수) 1부 - 상기 서식 내 지원사업 요약서(지정양식) 1부 - 상기 서식 내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지정양식) 1부 - 상기 서식 내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(지정양식) 1부 2.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부	이메일 신청
선택제출	3. 프로젝트(사업) 포트폴리오 또는 회사(단체) 소개서(자유양식) 1부 4. 기타 지정·인증서, 투자약약서, 상장 등 참고자료(PDF) 각 1부	

□ 심의 및 선정

- (선정방법) 전문가 서면심의에 의한 최종 선정
- (선정절차) 행정검토^(3월 5주) ⇒ 서면심의^(4월 1주) ⇒ 결과발표^(4월 3주)
 - 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심의 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구분	내용
행정검토	· 신청서류 검토, 서류 미비 등 결격 지원서 제외 * 예술×기술 융합분야 단체, 벤처, 스타트업 비 해당시 심의대상에서 제외
서면심의	·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(3인)이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 · 최종 30개 내외 선정 *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확인(발생)될 경우, 최종선정 이후라도 협약 해지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- (심의기준) 사업 현황 및 지원동기, 사업 내용, 사업 잠재력 등

심의항목	내용	배점
사업 현황 및 지원동기	· 아트코리아랩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의 명확성 * 아트코리아랩 인프라/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 여부	30
사업(프로젝트) 내용	· 예술×기술 융합 기반의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혹은 사업내용 보유 여부 · 시장 내 타 기업(단체) 대비 경쟁우위 확보 여부(아이템의 참신성, 독창성 등)	25
사업(프로젝트) 잠재력	· 사업모델이나 프로젝트, 기술에 대한 투자 가능성 · 판로확장 가능성 (국내외 시장진출, 판매, 유통처 확장 등)	25
기대효과	· 예술분야 및 예술시장에 발휘할 수 있는 기여도, 파급효과 · 아이템의 사업화 및 상용화, 예술-기술 융합 우수사례 도출 등 환류 가능성	20

- (우대사항)
 - 2021~2023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 선정기업(단체) (가점 2점)
 -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외 지역 소재 기업(단체) (가점 2점)

□ **유의사항** ※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내 지원사업 요약서(붙임 1)에서 확인 필수

○ **신청 자격 제외 대상**

-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
-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, 국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
-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지 않은 프로젝트 팀, 동아리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, 4대보험을 체납 중인 경우
-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,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,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
-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업 및 단체
-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 및 단체의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-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(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) 및 일정 기간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

○ **선정기업(단체) 유의사항**

- 사업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, 지원선정 취소 등 제재가 가능함
- 사업선정 이후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,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참여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- 사업선정 이후 의무사항 불이행, 고의 혹은 과실 및 기타 사정으로 본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본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사진, 영상, 성과 등의 사업 결과물을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홍보 및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

○ **선정기업(단체) 의무사항**

- 사업점검 및 환류를 위한 만족도 조사 등 설문 요청 시 사업 참여자 전원 필수 응답 제출
-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성희롱·성폭력 방지조치 필수
 -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
 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(사업참여인력 전원)
- 성장지원 프로그램 중 1개 이상 월 1회 참여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총 4회 이상 참여 必
- 사업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실적보고서(센터 지정양식) 제출
- 사업종료 후 5년간 이력·성과관리에 필요한 설문, 정보제공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

※ **예술분야 기업(단체)란?**

- * 미술(응용미술 포함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 및 만화 등 영역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·공연·전시·판매하는 것을 업(業)으로 하는 것을 포함
- *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(정의) 및 제36차(시행 '23.3.28.) 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
- * 연예, 영화, 만화, 건축, 출판, 어문 등은 후 순위

※ **예술기업·단체 예시**

예술분야 기획·제작	- 공연·전시·문학 기획 및 운영 (* 장르 융합, 기술결합 작품 포함) - 예술 콘텐츠·제품·플랫폼 등 기획 및 개발, 생산(VR, XR, 아트상품, 음원 등) - 예술인(공연예술인·시각예술인·문학인 등) 매니지먼트
예술분야 유통·배급	- 예술작품(공연·미술·문학 작품 등)을 온·오프라인 판매 및 대여(구독서비스 등) - 공연·전시 티켓, 용품(악기·악보·공연소품·화구 등), 아트상품 등 온·오프라인 판매 및 매개·대행
예술분야 서비스	- 공연 실연, 미술작품 제작 관련 기술 제공 - 예술분야 행사, 상품, 콘텐츠 홍보마케팅 대행 - 지식재산권(IP)기반 서비스 및 예술교육 콘텐츠 제공·매개